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0집 제2호 (2004.12)

中國 海上企業任員賠償責任保險의 필요성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need of Director and Officer Liability Insurance of China marine industry

김성은*

목 차

Ⅰ. 中國海上企業의 任員賠償責任保險 導入 必要性
Ⅱ. 中國 海上企業의 合併 分割制度와 任員의 責任增加
Ⅲ. 任員責任賠償保險 槪念과 任員責任賠償保險의 開發
Ⅳ. 結論

Key Words: Director and Officer Liability Insurance, China marine industry, Stockholders. disposal, auction, state-owned marine enterprise.

Abstract

China's Marine Industry are growing up gradually as China's economy has advanced. Also China's Sipping Industry has been advanced. China Sipping Company is going to become a top 5 of world marine industry. China's Marine Industry has supervised and controled a manager under the mechanism of market economy.

China's Marine Industry has been changed from the state-owned marine enterprise affected by government and government has effected on the forma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manager. So, the supervision func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was reduced. The executive' role is emphasized when possessing the state-owned enterprise through disposal or auction, or when inducing the participation of foreign attraction.

It is desirable for the Chinese director and officer to prepare for the claims internationally due to the international economic actions, , westernization of the public's consciousness about the compensation for damage followed by the increasing national income, and to prepare the increasing demand of cases due to increasing lawyers.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Ⅰ. 中國海上企業의 任員賠償責任保險 導入必要性

중국항만에서의 컨테이너화물의 증가량이 거의 평균 30%이상의 신장을 하고 있고, China Shipping(中國海運)같은 선사는 30%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다[1]. 중국의 유명한 해상기업인 COSCO, China Shipping, SINOTRANS등은 계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고, China Shipping은 10년 이내에 세계 5대선사로 진입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8,500TEU급의 초대형선을 발주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中國海上企業은 원가가 우리기업보다 낮기 때문에 운임이 낮아도 이익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 大形船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운임경쟁력이 우리 해상기업에 비해 상당히 위협적이고 발전속도가 빠르다. 중국의 포워더들이나 항만부대업종의 서비스가 뒤떨어진다고 하지만 많은 인력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된다. 해상기업의 CEO들이 해외로 돌아다니며 활발하게 세일즈 하기도 한다. 중국 해상기업에는 임금도 싸지만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다[2]. 중국의 대표적인 해상기업 밀접지인 상해항과 푸동신항은 항만과 제조, 물류, 보험, 무역회사, 금융회사가 연결되어 중국경제의 심장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특별히 외고교자유무역지역(外高橋保稅區, Waigaoqiao Free Trade Zone)은 국제무역, 보세창고, 수출가공의 다기능 종합무역 지대이다. 2,000여개의 무역회사와 60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지사가 진입해 있다. 와이까우차우 항구의 화물처리량은 2000년 현재, 964만 화물톤(tons of freight), 121만 TEU이다. 국제무역 해상운송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3] 많은 해상기업들이 물류의 중심지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中國海上企業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건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거의 국유기업이던 중국의 해상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사내에서 자정노력인 견제제도가 필요하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주주에게 유리한 대표자소송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기업들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WTO와 약속한 보험시장 개방이 2004년 12월 10일로 시행되었다. 보험시장의 개방과 때를 맞추어 중국의 해상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위하여 임원책임배상보험제도를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연구로 중국해상기업의 지배구조를 건전하게 할 수 있고 개방된 보험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1) 해운신문, 2004년 11월 12일. [해운] 해외현장 취재/中國 天律지역 주재원 좌담회 http//blog.naver.com/smoves/120007509952

2) 전게 해운신문, 인터넷 검색

3) 남덕우, 「동북아로 눈을 돌리자」, 삼성경제연구소, 2002. 10월 31일 참조

中國海上企業의 現代企業構造로의 改革은 理事會의 理事들이 자기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에 달려 있다. 中國 國有企業에서 구성되는 理事會에서 흔히 中央政府의 官僚나 共産黨員들이 國家權力을 배경으로 內部理事나 社外理事로 理事會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中國 經濟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中華人民共和國 公司法의 시행으로 有限會社와 株式會社가 중요한 회사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외자유치의 증대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인회계사, 敎授등의 전문가 중심의 社外理事를 선임하여 기업경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이사는 결정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中國海上企業에 있어서 유능한 전문가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하기 위해서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中國은 기업경영자와 다수의 직공간의 분쟁이나 주식회사의 경영자의 기만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자와 주주간의 분쟁, 기업발행의 채권이 지급불능이 되는 경우의 기업과 채권의 소지자간의 분쟁,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격 없는 聯營組織 또는 合伙組織중 다수의 聯營組織構成員 혹은 合伙構成員과 다른 사람간에 발생하는 분쟁에는 美國의 集團訴訟制度(class action)과 일본의 選定當事者制度를 참고로 하고, 80년대 이래의 中國의 集團紛爭 解決의 경험을 토대로 마련한 代表者訴訟制度를 가지고 있다.

이는 韓國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中國 民事訴訟法 제55조의 當事者의 數가 확정되지 않은 代表訴訟과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選定當事者制度(한국 민사소송법 제49조)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이 발전한 代表者 訴訟制度는 임원들이 소신껏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任員賠償責任制度가 필요하다.

Ⅱ. 中國 海上企業의 合併 分割制度와 任員의 責任增加

中國정부는 국유기업이 주류를 이루던 해상기업을 개혁하여 현대기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합병, 연합, 매각, 리스 혹은 파산 등의 형태로 國有海上企業을 처분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로 소규모의 국유해상기업들이 해당된다. 합병, 매수, 연합 등을 통해 대기업 또는 기업집단에서 흡수하거나 주식합작제 기업으로 전환한다. 매각, 경매 등을 통해 완전 사유화하거나 외국자본의 참여를 유도하여 삼자기업으로 전환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海上企業은 파산을 실행하는 일을 추진하는 임원들이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존재한다.

특별히 M&A는 해당 회사의 주가와 대단히 민감한 관련을 가진다. 특히 특정 海上企業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가 시도되는 경우 주가는 급상승하는 것이 보통이며 경영진

의 성공적인 경영권 방어, 그린메일의 지급 등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증권시장에서는 M&A 관련정보가 대단히 중요한 재료이며 그에 대한 수요가 높다. 그리고 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불법적인 정보의 취득과 이용, 허위정보의 유포 등에 대한 동기도 크기 마련이어서 M&A의 활성화는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질서 교란 가능성을 동반하게 된다. M&A의 활성화에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시장참가자들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규제장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4] 이런 제도가 발달하면 중국의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회사의 재무구조를 건실히 하는 방법으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들 수 있는데 기업경영의 투명성 결정요인으로는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경영자에 대한 견제기능을 들 수 있다.

의사결정과정의 독단성과 폐쇄성 문제와 관련하여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영에 있어서의 내부견제 기능으로서 감사의 역할을 증대하며, 경영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시장의 감시제도, 예를 들면, 소수주주권의 강화 및 대표소송제도, 주주제안제도,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및 M&A 제도 등의 활성화를 통해 투명한 기업경영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社外理事나 理事들을 보호하는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經營判斷의 原則과 任員賠償責任保險이다.

任員賠償責任保險(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은 회사 임원이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다. 직무상 의무위반 태만 실수 잘못 허위진술 누락 등으로 인해 주주와 채권자 및 직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받았을 경우 보상해 준다. 그러나 임원 자격을 뛰어넘어 개인적 이익을 누렸거나 사기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 타인의 신체상해와 정신적 고통, 물질적 피해 등은 보상받지 못해 임원이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보험가입대상은 상장 및 비상장기업으로서 공인회계사(CPA)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법인과 해외현지법인 임원이다.[5] 中國海上企業의 경우 더 많은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야 하며 점차 외국주주들에 대한 임원들의 책임이 가중해 지고 있다.

1. 中國 해상기업의 有限會社와 株式會社의 合併·分割

중국의 해상기업들이 발전함으로 서로간과 외국간 회사와 합병과 분할이 일어나고

4) 김화진, 「M&A와 경영권」, (박영사 · 1999) 247면.
5) 한국경제신문1999. 3. 26일자

있다. 거의 모든 해상기업들이 유한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외국과 합자나 합작을 할 때에는 주식회사로 형태를 갖추기도 한다.

有限會社와 株式會社의 合併과 分割은 中華人民共和國 公司法(會社法을 말함)에 잘 나타나 있다. 會社 合併 또는 分割은 會社의 株主總會에서 결의하여야 하고(中華人民共和國 公司法 第182조), 株式會社의 合併 또는 分割은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한 부서 또는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同法 第183條).

會社合併은 吸收合併과 新設合併 2가지 형식을 채택할 수 있다. 1개의 會社가 기타 會社를 흡수하는 것이 吸收 合併이며, 피 흡수된 會社는 解散된다. 2개이상의 會社가 合併하여 새로운 하나의 會社를 설립하는 것이 新設合併이며 合併 각 당사자는 解散한다. 會社 合併은 合併 각 當事者가 合併 協議書에 서명하고 貸借對照表 및 資産明細書를 작성해야 한다. 中華人民共和國 公司法은 동일한 유형의 회사들 사이의 合併만 인정한다[6]. 合併에는 吸收合併과 新設合併이 있다. 吸收合併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吸收하고 원 회사는 계속 존속하고 기타 회사는 解散하는 것을 말한다. 新設合併은 2개 이상의 회사가 合併하여 하나의 회사로 되고 合併 각측은 新設會社의 설립으로 하여 해산하는 것을 말한다(中華人民共和國 公司法 第184條 第1項·第2項). 合併은 支配構造를 改善하고 經營의 透明性을 提高하며, 구조의 再調整하는데 유리하다. 합병시 회사의 임원은 책임을 져야하며 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消滅會社의 局外株主에게 株式買受請求權을 인정하여야 하며, 임원들이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다[7].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가 대련항을 국제해운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해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있다. 대련항의 투자여건 개선에 힘입어 2004년 1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개 이상의 해상기업들이 대련시에 진출했으며, 이 가운데는 덴마크의 머스크사나 일본의 NYK사와 같은 대형 해상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대련항 그룹이 머스크사, 싱가포르 항만그룹, 중국 코스코사등과 함께 2억 9000만 달러가 투자될 것이다. 대련항은 국제항로를 개설하거나 운영본부를 대련시에 이전하려는 외국해상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8],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는 중국해상기업 임원의 책임은 커다. 합병에 대한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영국에서 회사가 상대방 회사 임원들의 설명을 믿고 자회사를 취득하였다. 상대방 임원들이 제시한 자료가 부정확하였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너무 높았다고 판단한 회사는 매각회사·임원들을 상대로 5,900만파운드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처음 10개월간 소송방어비용이 85만 파운드를 넘어서자, 피고인 임원들은 법정

6) 韓 大元외 14人 共著, 「現代中國法入門」,(博英社·1995), 347-348면.

7) 中國의 國有企業을 現代 市場經濟形態의 企業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간편하고 신속한 簡易合併制度와 小規模 合併制度를 도입하고, 株主의 權益保護를 위해 反對株主에게 株式買受請求權을 인정하여야 한다.

8) 전게 해운신문, 2004.12.8일 [항만] 대련항동북아국제해운센터로육성, 인터넷 검색

외에서 화해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하여 보험회사와 합의하였다. 보험회사는 결국 보험가입한도인 수백만파운드를 지급하였다[9]. 싱가포르의 세계적인 해상기업인 PSA가 Asia Container Terminals(ACT)를 인수해 홍콩항에 진출하려고 하고, ACT의 29.5% 주식을 보유한 CSX 그룹은 홍콩항 CT3와 CT8 서쪽 터미널인ACT, 천진, 청도, 연태, 부산신항만등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10] 이 일을 집행하는 임원들에 대한 책임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많은 외국 해상기업들이 중국의 해운관련 항만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04년 항만법을 개정하였다. 국내외 조직-개인의 투자 및 경영의 장려(제1장 5조), 지방자치제 항만주관부 일원체제(一港一政)의 명확화(제6조), 정부와 기업의 분리(제3장)으로 개정함으로서, 해외 해운관련기업들이 선진기술과 자본을 투입하여 중국 항만개발 및 운영에 참여하게 하였다. 이는 중국기업과 외국기업들이 합병과 분할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11].

2. 海上企業(有限會社)의 分割

會社分割이란 하나의 海上企業이 두 개 이상의 會社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한다. 會社分割은 新設分割과 派生分割으로 나눈다. 新設分割은 원 회사는 소멸하고 그 전부의 재산을 分割하여 두 개 이상의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派生分割은 원 회사는 계속 存續하고 원 회사의 재산 또는 영업의 일부분으로 하나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국의 대표적인 海上企業인 COSCO는 완전히 회사를 분리하여 독자적인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게 하면,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애를 쓰게 되고, 모든 계획이 상황에 맞게 진행시키기 때문이다[12].

會社分割은 企業의 규모가 비대한 會社가 영업부문별 또는 지역별로 分割하여 적절한 경영규모로 조절하려는 경우나 採算이 부진한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별개의 獨立會社로서 자조적으로 운영케 함으로써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경우에 분할을 한다. 新規事業을 개시하는 경우의 위험부담을 子會社를 통하여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利益을 분산하여 절세의 효과를 기하려는 경우, 任員 자리의 증설 내지 인사재배치 등의 勞務管理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사업의 한 부분을 분리하는 동시에 그 부분을 다른

9) 오홍주, "회사임원의 배상책임", 「보험법률」 제7호, (보험법학회, 1996), 40-41면.
10) 해운신문, 2004년 11. 19일 [항만], PSA 홍콩항 진출 가시밭길, 인터넷 검색 http//blog.naver.com/smoves/120007752703
11) 이철영, "동북아시아의 주요항만을 돌아보고", 해운신문 2004년 12. 17일 특별기고인터넷 검색
12) 해운신문, 2004년 11, 12일. 인터넷검색 (http//blog.naver.com/smoves/120007509952)

會社 또는 他會社에서 분리되는 일 부문과 결합하여 共同 子會社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會社分割이 이용될 수 있다[13].

이런 목적에 비추어 볼 때 中國의 經濟가 빠르게 발전하고, 中國의 海上國有企業의 개혁을 하기 위해서 會社分割制度는 필요하다. 中國의 分割制度는 韓國商法처럼 獨立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합병과 함께 규정되어 있어 중요성에 비하여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하다[14]. 빠른 성장을 나타내는 中國海上企業의 분할제도가 발전할 것이며 분할을 주도하는 임원의 책임이 증가할 것이다.

회사가 合併하는 경우 合併 각 측은 合併契約을 체결하고 貸借對照表 및 財産明細書를 작성하여야 하며 社員總會(株主總會)에 상정하여 의결한다. 合併契約은 合併 각측의 社員總會(株主總會)의 결의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한다(中華人民共和國 公司法 第182條, 第184條 第3項). 會社分割도 社員總會(株主總會)決議를 거쳐야 한다(동법 제182조). 合併과 分割의 決議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대다수 주주의 찬성을 얻어서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利害當事者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판단자료를 열람을 허용하고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少數派株主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反對株主에게 株式買受請求權을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 合併節次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株主總會의 承認決議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立法이 필요하다. 簡易合併과 小規模 合併이 이에 해당된다[15].

---

13) 朴吉俊·孫珠瓚·梁承圭·鄭東潤,「改正商法逐條 解說」, (博英社·1999), 122면.

14) 甲會社가 분할하여 乙會社 및 丙會社를 설립하는 경우가 완전분할이고 이를 中國에서는 解散분립이라 한다. 甲會社가 분할하되 존속하면서 그 영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乙會社(또는 乙會社와 丙會社)를 설립하는 경우가 불완전 분할에 해당하며 中國에서는 존속분립이라 한다. 어느 경우이든 분할 후의 新會社(乙·丙)의 株式은 갑會社의 株主에게 持株數에 비례하여 주어진다. 이것을 인적분할이라 하며, 商法상의 분할은 이 경우를 말한다. 만일 新會社(乙·丙)의 株式을 甲會社가 가지는 경우는 物的 分割이 되며, 엄격한 의미의 會社分割은 아니지만 그 절차와 효과 등에 관하여 人的 分割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韓國商法 第530條의 12). 被分割會社가 消滅(解散)하는 경우에도 淸算은 하지 아니한다.
피분할會社(갑)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 개의 존립중의 會社와 합병하는 경우가 있다(韓國商法 第530條 第2項 第2號) 이 경우를 分割合併이라고 한다.
中國에서는 분할합병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韓國은 물론이고, EC 第6指針(directive)은 會社分割로 分割合併과 新設合併 및 양자의 혼합형을 인정하고 프랑스와 獨逸法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中國의 株式會社가 발전하게 되면 포함될 것으로 본다.
韓國商法의 會社分割에 관한 규정은 조문의 위치에서 보아 株式會社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즉 被分割會社가 株式會社이어야 함은 물론, 분할 후 신설되는 會社도 株式會社라야 하며, 分割合併의 相對方會社도 株式會社라야 한다. 이것은 分割이 필요한 會社는 어느 정도 사업체의 규모가 큰 경우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立法조치이다(朴吉俊·孫株瓚·梁承圭·鄭東潤, 전게서, 120-121면). 中國에도 株式會社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15) 合併契約書의 承認決議는 다수결의 일종인 株主總會의 特別決議에 의하므로 少數派株主는 합병에 반대하더라도 合併契約書의 承認決議를 저지할 수 없다. 따라서 합병에 반대하는 少數株主에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會社로부터 퇴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 이것이

會社는 合併決議 또는 分割決議를 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債權者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신문지상에 최소 3차 공고하여야 한다(同法 第184條 第3項, 第185條 第2項). 合併은 合併을 하는 會社의 구성원인 株主와 그 債權者 등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合併의 중요한 내용은 이를 事前事後에 널리 公示하여 株主와 債權者에게 合併에 대한 찬부, 이의제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中國의 合併制度에서는 事前公示는 규정되어 있으나 事後公示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事後公示를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공시의무는 중요한 것으로 미국의 경우는 회사의 대주주가 회사 임원으로부터 회사 소유의 해변토지에 대한 향후 정책을 듣고, 별 전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 임원에게 자기주식을 전부 팔았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는 그 토지의 개발계획을 발표하였고 따라서 회사의 주가는 급상승하였다. 이에 그 주주는 임원이 잘못 설명하였으므로, 주식을 미리 팔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16].

3. 三資企業의 解散·淸算

中國海上企業과 外國海上企業들이 기업을 만들면 合資企業, 合作企業, 外資企業의 형태로 기업을 만들 수 있는데 이를 三資企業이라 한다. 會社가 解散하면 存立중에 발생한 일체의 對內的인 法律關係를 종국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淸算을 하여야 한다. 淸算이란 解散한 會社의 法律關係를 정리하고 그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이다. 株式會社가 解散하면 合併과 破産의 경우 외에는 淸算節次를 밟아야 한다[17].

外國人投資企業의 '解散'이란 外商投資企業의 法人格 소멸원인이 되는 法律事實을 말한다. '淸算'이란 解散에 따른 外商投資企業의 기존 法律關係를 정리하는 절차이다. 여기서 解散의 원인이 되는 法律事實을 바로 '解散事由'라고 한다. 外國人投資企業의 法人格이 解散事由 발생 즉시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法律關係를 정리하는 淸算節次를 완결해야 소멸한다.

中國海上企業에서 解散은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이 없을 때의 영업정지를 말한다[18].

解散에는 自動解散과 强制的 解散이 있다.

自動解散이란 理事會 혹은 聯合管理機構는 契約 혹은 定款을 근거하여 영업만료, 합병 또는 분리로 인한 解散을 말한다. 合營企業의 期限이 만료된 때에 각 당사자가 기한연장을 하지 않으면 解散되거나, 企業에 만회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자동적

反對株主의 株式買受請求權이다.

16) 오홍주, 전게논문, 40-41면.

17) 李基秀·柳珍熙·李東承, 前揭書, 546면; 韓國商法 第531條 第1項.

18) 鄭壽, 「公司法新與例解」, (同心出版社·2001) 367-368면.

으로 解散된다. 각 合營當事者중 일방이 협의, 契約, 定款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불가항력적인 손해를 입었을 때도 解散한다.

强制的 解散이란 法院 혹은 기타 주관기관에 의하여 解散되는 것을 말한다. 企業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거나 채권자가 法院에 破産訴訟을 하였을 경우에 法院이 破産決定을 내리면 企業은 解散되고 破産節次를 밟는다. 法院 혹은 기타 주관기관에서 强制的인 명령에 의하여 解散되는 경우가 있다. 企業經營 목적이 違法 혹은 사실상 이미 위법활동을 한 경우거나 설립한 會社가 장기간 영업을 정지 또는 法院이나 주관부문에서 반포한 解散命令이 있을 경우 强制的으로 解散된다.

合併에 의해 解散되는 경우라면 存續企業 또는 新設企業이 解散企業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淸算節次는 불필요하다. 外國측 投資者는 淸算이 아닌 持分讓渡의 방식으로 投資企業에서 철수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그 法人格은 그대로 존재한다.

中國은 企業構造調整으로 인한 실업자가 늘어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한 임원의 책임이 증가하고 있다.

모든 企業構造의 수단은 설정된 目標를 위한 會社 企業들의 탄력적인 변신과 적응 다시 말해 效率性 提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는 동시에 會社企業 내부에서의 관여당사자들의 利害調節 역시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19].

영국의 한 금융기관에서 직원이 추한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하였다. 그 직원은 후에 전혀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고 따라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20].

4. 海上企業의 破産

中國에는 모든 經濟主體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된 倒産法이 없으며, 企業破産法이 倒産法制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 法은 計劃經濟時期인 1986년 12월 2일 全人大常務委員會에서 채택되어 198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1991년 民事訴訟法 改正에 따라 破産대상은 모든 企業法人으로 확대되었으나, 심리시에는 民事訴訟法 외에 企業破産法의 관련규정이 참조된다. 이들 두 개 法에 대해서 각각 最高人民法院의 司法解釋이 존재하여 法을 보완하고 있다. 企業破産法의 시행에 관해서는 국무원 등이 수시로 通達을 내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21]. 이외에도 中國의 廣東省과 深川經濟特區 등 일부 地方政府에서는 獨自的으로 企業破産에 관한 特

19) 권기범, 「企業構造調整法(第3版)」, (삼지원 · 2002), 37면.
20) 오홍주, 전게논문, 40-41면.
21) 韓國輸出入銀行, 「아시아 主要國의 倒産處理制度 現況과 評價」, (韓國輸出入銀行 · 2000), 47면.

別法規를 制定하여 시행하고 있다. 당해지역에서는 民事訴訟法, 企業破産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구체적인 지방 特別法規로서는 廣東省 會社破産條例가 1993년 6월 13일 공포, 同年 8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深川經濟特區 企業破産條例는 1993년 12월 18일 공포하여 同日字에 시행하고 있다[22].

企業破産法에 의거 對外債務가 처리된 事例로는 廣東國際信託投資公司(GITIC)은 廣東省의 外資導入 창구로서, 外國銀行들은 廣東省 정부의 보증에 기초하여 廣東國際信託投資公司(이하 GITIC라 칭함)에 대규모 대출을 행하여 왔다. 그런데 1998년 10월 中國의 중앙은행인 中國人民銀行(People's Bank of China)은 대형 비은행 금융기관인 GITIC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동시에 淸算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다. 당초 淸算공고에서는 國家外換管理局(SAFE)에 등록된 外國債務에 대해 우선적으로 상환한다는 방침이 나타나 있었다. 그러나 이 방침은 淸算作業 과정에서GITIC의 채무초과액이 예상외로 큰 것으로 판명되자 이후 철회됨으로써, 외국채권에 대해 優先辨濟는 물론, 중앙정부의 보증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GITIC 淸算委員會가 세운 방침은 企業破産法에 따른 破産申請이었다. 淸算委員會는 외국채권에 대해 특혜대우가 '法 아래 平等'原則이 위배되고, 債務辨濟를 法律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당초 國家外換管理局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은 채권의 處理問題와, 외국채권에 대한 優先辨濟 정도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외국은행들은 中國 政府가 약속을 파기하고, 法律을 내세워 破産辨濟 절차를 밟은 것에 강한 불신감을 나타냈다.

廣東省 高級人民法院은 GITIC가 만기도래한 국내외 債權을 완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法律이 정한 破産條件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破産辨濟節次를 밟기로 결정한 사건이다[23]. 임원책임배상보험이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라면 이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임원이 있다면 채권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더 많은 외자도입과 WTO가입으로 인한 세계시장의 일원이 된 중국은 파산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임원이 있어야 하며, 임원책임배상보험이 필요하다.

5. 理事會의 理事의 責任

中國에서의 대부분 上場企業의 意思決定權이 理事會에 속한다. 公司法에 의해 理事會가 企業의 意思決定機構이며 5名 내지 19名 理事로 구성된다. 理事會의 권한과 기능은 株主總會의 연도회의 개최, 株主總會의 결정방안 집행, 會社의 投資계획 결정, 會社의

22) 韓國輸出入銀行, 前揭書, 47면. 주28 참조.
23) 韓國輸出入銀行, 前揭書, 52면.

조직구조 설치 결정 등이다. 理事會가 支配構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구성방식이 감시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國有海上企業에서 전환된 上場企業의 理事會에 國有資産管理局 등 정부측의 대표자가 진입한 경우가 많다.

理事會의 구성원은 內部理事와 社外理事로 구분된다. 理事會 구조에 있어서 內部理事 통제와 株式構造 가운데 法人株와 國家株의 집중도와 관련이 많다. 즉 大株主持分이 많을수록 內部理事 統制의 정도도 강해진다. 따라서 대부분의 上場企業의 大株主는 國家株主나 國有法人株主이기 때문에 國有株의 비율이 크면 클수록 내부理事의 統制도 강해진다.

韓國의 IMF의 救濟金融을 받은 환란의 주요원인이 大株主가 理事의 지위를 가지지 않으면서 그룹비서실이나 기획조정실 등을 통하여 系列會社의 理事들에게 지시하여 그룹 전체의 政策을 결정·집행하는 일이 적지 아니하였다. 中國의 경우 國有企業들이 有限會社나 株式會社로 전환하면서, 政府나, 關聯部署가 韓國의 大株主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1998년 改正韓國商法은 이처럼 法的으로 理事의 지위를 가지지 않으면서 會社의 政策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事實상의 理事(de facto director) 내지 背後理事(shadow director)에게 理事와 똑같이 무거운 책임을 지우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韓國商法 第401條의 2>. 中國도 所有와 經營을 분리하는 작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有限會社나 株式會社에 부당한 간섭을 줄여야 한다. 韓國에서는 理事가 부담하는 민사책임에는 會社에 대한 것과 第3者에 대한 것이 있다. 그러나 理事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더라도 理事가 무자력인 경우에는 실효가 없다. 따라서 理事 및 任員의 責任保險制度(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D & O liability insurance)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24].

社外理事制度가 발달한 미국의 경우, 공개회사에서는 회사의 임원도 사용인도 아닌 社外理事가 理事會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社外理事의 활용은 오늘날 미국의 공개회사에서는 일반화되었다. 이들 社外理事들은 다른 기업 및 다른 기관 출신들이기 때문에 참신한 생각과 제언을 하며, 그들의 경력은 회사의 주주나 사용인에게서 찾아 볼 수 없는 숙련능력과 전문성 및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다. 그리하여 사외이사들은 "idea man"으로서, 또는 내부이사들 보다 더 객관적이기 때문에 '경영진의 양심(as the "conscience" of management)'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25]. 中國海上企業의 건전한 성장과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를 통한 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사외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사외이사들에게 任員責任賠償保險

24) 鄭東潤, 「會社法」, (法文社 · 2,000) 445-446면.
25) 김영선, "이사의 책임에 대한 보상제도와 보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대학원 · 1988), 20-21면

이 필요하다.

6. 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s 미국 주식예탁증서) 관련 中國海上會社 任員의 賠償責任 위험

中國海上會社 任員들도 회사가 미국 증권시장에 ADR(미국예탁증서)을 발행한 경우에는 미국법원에서 제소당할 위험이 있다. 주식과 관련하여 회사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수없이 많고 그 금액도 수억불씩이나 된다. 설사 소송방어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소송방어비용이 백만불대가 되기도 한다. 근래에 미국에서는 한해에 12개회사중 1개사는 제소당한다. 한 조사기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주식관련 소송의 건당 평균 배상금액(1991년 7월-1993년 6월)은 11백만불(소송비용 2백만불 포함)이나 된다. 일본의 소니사는 회사의 영상사업과 관련하여 적시에 공시하지 않았으므로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ADR 주주로부터 제소 당하였으며 다른 비 미국회사의 임원들도 마찬가지로 제소 당하고 있다. 이토사가 한 영국회사를 상대로 美國法院에 제기한 주식사기 손해배상소송(이토바사 손해액 111백만불)에 대한 미국 법원의 관할권 인정 결정(1995. 5. 15자)과 관련하여 미국의 한 유명한 법률회사(Wilson, Elser)는 이렇게 평가한다. 「이 결정은 미국에 ADR을 발행하는 모든 비 미국회사의 임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거래된 주식과 관련하여도, ADR 발행시 부정확한 정보제공을 이유로 미국법정에서 미국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26]. 中國海上企業들이 中國經濟가 발전함으로 미국에 합작회사를 세우고 있고, 미국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기도 한다. 이 때 미국예탁증서를 발행하였다면 中國海上企業 임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의 주식시장은 외자도입을 위해 홍콩이나 뉴욕 호주의 주식을 따로 분리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해당사항이 있고, 우리보다 훨씬 넓은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訴訟의 당사자가 될 확률이 높다.

Ⅲ. 任員責任賠償保險 槪念과 任員責任賠償保險의 開發

1. 任員責任賠償保險의 개념과 구조

任員의 責任保險은 미국회사법이 이사가 주주 또는 제3자로부터 그 책임추궁을 받는

26) 오홍주, 전게논문, 40-41면.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소송에서 방어에 성공하거나 기타 소송절차에서 성공하면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제비용을 보상해주는 보상제도와 더불어 시행된 제도로서 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책임을 짐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責任保險으로서, 회사가 보상한 부분에 대하여 보험자가 이를 회사에 대하여 보상함과 동시에 회사가 이사에게 보상하지 않는 경우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이사에게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책임보험이다. 이 保險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책임으로부터 이사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보상으로서 정당화된다. 이사의 책임보험도 회사와 이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구제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27]

미국에서 판매되는 이사의 責任保險契約은 회사보상보험과 이사의 책임보험과의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하나의 package로써 체결되는 보험계약이다. 그러므로 이 보험의 보험계약자는 회사이고 회사보상보험은 회사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보험인데 대하여 이사의 책임보험은 이사 및 지정된 임원을 被保險者로 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保險料의 90%는 회사보상보험을 위하여 회사에 대하여 청구되고, 나머지 10%는 피보험자로 지정된 이사 및 임원에게 이사의 책임보험을 위하여 할당된다. 실질적으로는 이사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된다.

미국에서의 회사 경영진은 이중구조 즉 분업체제가 잘 발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존속시키면서 실제의 업무집행은 Officer에게 위임하고 그 통제를 Director가 행하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 이는 주주가 회사의 소유자이며 보다 높은 배당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이 보다 많은 투자가의 흥미를 끌게 하고 나아가서 주식구입을 촉진시켜 회사의 안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경영진의 의식이 강하게 작용한다[28]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Lydando No. 1약관, Home약관 및 CNN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2. 被保險者

이사의 責任保險契約에 의하여 담보되는 被保險者는 회사와 이사 및 임원이다. 회사란 모회사와 보험약관개시일 이전에 또는 개시 일에 존재하는 자회사 및 약관개시일 이후 취득하거나 설립된 자회사를 말하며 그 자회사를 취득 또는 설립한 후 60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료의 조정이나 담보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

27) 김영선, "이사의 책임보험은 회사와 이사의 보호 및 피해자구제에 중점을 둔다" 「보험법률」 15호 (보험학회 · 1997), 4-5면.

28) 류성경, 전게논문, 13면.

회사의 이사와 임원은 피보험자인 회사의 이사와 임원을 말하며 경영기능을 수행하는 자이어야 하고 독자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기만 하고 경영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자는 소송에 의하여 비난받을 경우가 적기 때문에 피보험자로 되지 않는다. 예전에는 D&O보험을 통해 보장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대상이 이사회의 임원이나 이에 준하는 간부사원에 불과했으나 요즘에는 대부분의 保險證券에 담당부서장급 뿐만 아니라 과장급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실재 담당부문이 없는 임원 역시 대부분의 약관에서는 기본적으로 담보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부장급 관리자도 피보험자 범위에 넣자는 주장이 있다.[29] 또한 피보험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기명회사와 기명자회사로 한정하도록 분명하게 규정하자는 주장도 있다.[30]

3. 保險事故

保險約款에 따르면 이사의 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는 보험기간 중에 또는 보험기간 이전에 한 이사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보험자가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인이 되는 이사의 위법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는 보험사고가 되지 않으며 보험기간 중의 피해자가 損害賠償請求要件(claims made basis)을 충족시켰을 때를 보험사고로 본다. 즉 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또는 보험기간 이전에 한 이사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로 인하여 회사의 손해 또는 보험기간 중에 이사에 대한 청구요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다. 피보험자인 회사는 이사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으면 즉시 보험자에게 이를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이사의 위법행위가 보험기간 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배상청구가 지연되어 보험기간 중에 배상청구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사가 그 책임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약관에서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90일이라는 발견기간을 두어 이사를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의 책임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기간 중 또는 발견기간 중에 청구요건이 충족되어야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게 된다.

4. 保險期間

保險期間은 보증증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 또는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만일 그 효력발생기간 또는 효력발생일과 그 증권의 종기와의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29) 「보험법률」 제 26호 (보험법학회 · 1999), 14-16면. 보험법학회 세미나 분석기사.
30) 김영선,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문제 고찰", 「보험법률」,제26호, (보험법학회 · 1999), 18면.

는 그 기간으로 단축되는 것으로 한다. 당사자가 발견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은 최후의 보증기간의 일부로 된다. 보험자는 특별위험이나 비상한 위험에 대하여는 보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사의 責任保險契約은 3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保證契約이 체결된다.

5. 發見期間

이사의 責任保險에 있어서 보험사고는 배상청구요건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이사에 대한 청구가 행하여지기 전에 보험기간이 만료된다거나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경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추가보험료를 지급하고 계약해지 또는 보험계약의 경신거절일로부터 90일동안 보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피보험자가 갖고 있는데 이를 발견시간이라고 한다. 추가보험료는 3년간의 보험료의 10%로 하고 이사는 본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경신거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 발견기간을 두게 된 것은 이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발견기간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은 보험기간 중 즉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경신거절일 이전에 발생한 위법행위에 한한다.

6. 保險料

총보험료의 90%는 회사의 보상보험을 위하여 회사에 대하여 할당되고 보험료의 10%는 개인이사의 책임보험을 위하여 할당된다. 10%의 보험료는 실제로는 회사가 보상하여 주어 이사의 보수라는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또 보험료는 보험에 붙이는 회사의 규모, 보험에 붙이는 이사의 인원수, 회사사업의 내용, 약관의 한도 및 회사의 이전 득실기록등을 감안하여 책정한다.

7. 擔保範圍

보험기간 중에 또는 보험기간 이전에 이사가 그 지위에서 행한 違法行爲를 원인으로 이사개인 또는 이사 공동에 대한 청구로부터 발생한 손해를 이사에게 또는 이사들을 위하여 보상하며, 또 이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의 손해를 회사에 대하여 또는 회사를 위하여 보상한다.

여기서 보상되는 손해는 이사의 法的 責任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모든 금액을 의미하며, 약관의 규정에 따라 배상청구에 관한 조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제비용, 부담금 및 지출비용을 포함하고 損害額, 判決額과 和解額. 또 위법행위와 관련되는 소송 또는 그 상소의 방어에 있어서 또 법원이나 행정부 및 입법부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거나 제기될 것이라는 위협이 있거나 또는 그 상소의 방어에 있어서 약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손해액, 판결액과 화해액 및 제비용, 부담금 및 지급비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형사소송의 벌금 또는 과료, 징벌적배상, 면책사유등에 해당되는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Ⅳ. 결론

중국의 海上企業은 중국경제가 빠르게 성장함과 동반하여 급성장하고 있다. China shippiong은 세계 5대 해상기업으로 진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海上企業이 발전함으로서 外國海上企業과 합병, 분할 또는 파산, 미국의 증권시장에 예탁증서를 발행 할 경우 임원들의 책임이 가중되고 있다. 중국은 外資導入과 國有企業의 개혁, 우리나라보다 범위가 넓은 대표자소송제도를 인정함으로 중국기업의 任員들은 점차 임원에 지위에 있으므로 자신이 어떠한 위험을 안고 있는지 의식하기 시작하였다.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국민의식의 서구화, 변호사수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소송수요의 창출 및 경제활동의 세계화에 따라 중국기업 任員들도 장래에 국내외로부터 적지 않은 클레임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中國海上企業의 임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任員責任賠償保險이 필요하다.

임원들이 회사에 대하여 책임의 규정을 뚜렷이 하는 것이 중국해상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길이며, 이는 외국자본의 유치와 회사자산의 가치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WTO에 가입함으로서 세계시장에 일원이 된 중국해상기업은 임원들의 적극적인 행사로 완전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 任員責任賠償保險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은, 「중국기업법」, 청암 , 2003.
박정동, 「현대중국경제론」, 법문사, 1993
蕭約基 지음, 康埈榮 옮김, 「중국경제개론」, 지영사, 1995.

심의섭 · 최용학 · 강희정, 「중국동북경제론」, 삼문사, 1994.
이기수, 「기업법」, 세창출판사, 2004
정동윤, 「회사법(제5판)」, 법문사, 1999.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3.
공덕암 · 김홍기, "21세기 동북아항만산업의 경제적 효과와 그 정책제안", 「무역통상학회지」 제3권 제2호, 2003.
김상균,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하여", 「보험법률」, 제21호, 1998.
김선정, "D&O보험에 관한 검토", 「상사법연구」, 제17권, 1999.
김성천, "전문가 책임보험", 「보험법률」, 제2호, 1995.
김영선, "이사의 책임에 대한 보상제도와 보험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대대학원, 1988.
---------, "이사의 책임보험은 회사와 이사의 보호 및 피해자 구제에 중점을 둔다", 「보험법률」, 제15호, 1997.
---------,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문제 고찰",「보험법률」, 제26호, 1999.
남덕우, 「동북아로 눈을 돌리자」, 삼성경제연구소, 2002.
류성경, "임원배상책임보험시장의 현황과 전망", 「보험법률」, 제21호, 1998.
서석홍, "상해시의 외자유치와 투자환경 개선 노력", 「신라대학교 동북아비즈니스지원센터 개관기념초청특강 및 정책연구발표회 자료집」, 2004.
엄창희,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법률」, 제26호, 1999.
오홍주, "회사 임원의 배상책임", 「보험법률」, 제7호, 1996.
최승재, "중국 기업법의 전개와 독점규제법에 대한 전망", 「법제」, 2004.
石少侠, 公司法, 吉林人民出版社, 1996.
孔祥俊, 公司法要論, 最高人民法院 人民法院出社, 1997.
鄭立 · 王益英, 企業法通論,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1.
馬俊駒, 現代企業法律制度硏究, 法律出版社, 1997.
鄧憲義, 企業和公司法,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1.
壽芳化, 公司法, 人民法院出版社, 1999.
邦泰, 公司法新釋与條解, 同心出版社, 2001.
薛有志著, 企業兼併與重組, 法律出版社, 1998.
陸百補主編, 大重組, 中國所有制結構重組的六大問題, 中國發展出版社, 1998.
游本强, 社會主義市長經濟與經濟法, 北京大學出版社, 1997.
L.D. Solomon외, Corporations-Law and Policy, Materials and Problems, Westpublishing Co., 1988.
법제처 홈페이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해운신문